

# 2021년 독일 노동분야 주요 이슈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강하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 ■ 머리말

2021년 독일 노동시장의 화두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회복과 새로운 위험, 그리고 새로 출범한 소위 신호등 연정이 제시한 복지제도 개혁을 꼽을 수 있다. 독일 노동시장은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며 팬데믹이 남긴 상흔에서 꾸준히 회복하였으나 12월 들어 나오고 있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연방과 각 주는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3G 원칙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 다가올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검토하는 등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 직업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술인력교육제도 내 발생해 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올라프 솔츠(Olaf Scholz) 신임 연방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은 장기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존 하르츠4(Hartz IV)를 대체하는 시민수당(Bürgergeld) 지급과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하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였다. 아래에서는 독일 노동시장의 현황을 시작으로 위 주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한다.

## ■ 2021년 12월 기준 노동시장 현황

연방노동청 산하의 연구기관인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이하 IAB)가 2021년 12월 30일 발표한 12월 노동시장지표<sup>1)2)</sup>에 의하면 12월 노동시장지표는 101.5점으로 전월의 103.9점에 비해 2.4점 하락하여 근소한 정도의 긍정적인 전망에 머물렀는데, 해당 지표가 4회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시장지표의 기준이 되는 실업지수와 고용지수 중 특히 실업지수는 11월에 비해 2.6점 감소한 98.9점을 기록하여 202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기록하였다. IAB의 엔초 베버(Enzo Weber)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고용지수는 104.1점을 기록하여 11월 대비 2.2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중간값 이상으로 계속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베버 교수는 추후 봉쇄가 다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두 차례의 봉쇄를 통해 경험과 인프라가 축적되었으며 IT 업계와 교육 분야에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 사업장 내 3G 원칙의 시행

2021년 8월 연방과 각 주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3G 원칙을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병원 및 요양시설 방문, 음식점 또는 미용실 등 방문 시 백신 접종자(geimpft), 완치자(genesen) 또는 검사결과 음성 확인자(getestet)<sup>3)</sup>여야 한다는 내용이었

1) IAB노동시장지표(IAB-Arbeitsmarktbarometer)는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과 지역별 고용센터(Arbeitsagentur)의 월별 조사를 반영하여 예측되는 추후 3개월의 실업지수와 고용지수를 기초로 하여 그 중간값으로 발표된다. 최소값은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의미하는 90이며 100점은 현상 유지 전망, 최대값은 매우 긍정적인 전망인 110이다.

2) IAB(2021), "IAB-Arbeitsmarktbarometer: Stärkster Rückgang seit April 2020", <https://www.iab.de> (검색일: 2022.1.1).

3)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간이 테스트 결과 또는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sup>4)</sup> 이 원칙은 11월 24일 시행된 감염보호법(Infektionsschutzgesetz)을 통하여 2022년 3월 19일까지 일터에 출근하는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된다.<sup>5)</sup> 연방노동사회부에 따르면 일터에는 사무실과 작업장 및 야외에 있는 사업장도 포함되며, 건설현장, 교통현장, 창고 및 급식소에서도 3G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중인 노동자와 자동차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특별히 강화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보건, 요양 분야의 노동자로, 이들은 백신 접종 또는 완치되었을 때에도 추가적으로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3G 원칙 위반 시 제재

사용자는 적합한 증명이 없는 노동자의 직장 출입을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노동자의 업무가 재택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노동자는 직장 출입이 금지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sup>6)</sup> 각 주의 관청 및 경찰청은 3G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3G 원칙에 참여하지 않거나 준수 여부 감독에 소홀할 경우 2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sup>7)</sup>

### 백신 접종 정보 보호

현재 많은 기업이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노동자의 신분증 등에 백신 접종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기업에 종업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계속하여 직접적으로 물어볼 권리는 없으며, 자신의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고 싶지 않은 노동자는 검사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기업은 노동자의 백신 접종 정보를 최대 6개월 이

4) Bundesregierung(2021), "Impfen-Ein Schutz für uns alle", <https://www.bundesregierung.de> (검색일: 2021.12.21).

5) Bundesregierung(2021), "Corona-Schutz am Arbeitsplatz: Das sind aktuelle Regeln", <https://www.bundesregierung.de> (검색일: 2021.12.21).

6) Bücker, T.(2021), "Alles rund um 3G am Arbeitsplatz", *Tagesschau*, Dezember 17, <https://www.tagesschau.de> (검색일: 2021.12.21).

7) RND(2021), "Heil droht: Ohne 3G kein Zutritt zum Arbeitsplatz und Lohnausfall-bis zu 25,000Euro Bußgeld möglich", November 19, <https://www.rnd.de> (검색일: 2021.12.21).

후에는 삭제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sup>8)</sup>

##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논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의회는 다가오는 2022년 일반적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하여 교섭단체의 입장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방총리 올라프 솔츠는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백신 접종의 의무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나,<sup>9)</sup>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의무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필요한 백신 접종 횟수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무화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10)</sup>

## ■ 신호등 연정의 사회보장제도 개편안<sup>11)</sup>

### 신호등 연정의 출범

2021년 12월 8일 올라프 솔츠 독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 신임 연방총리로 취임하면서 소위 신호등 연정이 출범하였다.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SPD)과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 자유민주당(FDP)을 상징하는 색깔이 신호등과 같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세 정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

8) Bücker, T.(2021), *op.cit.*

9) Tagesschau(2021), “Scholz im ARD-Interview: keine Spaltung der Gesellschaft”, Dezember 8, <https://www.tagesschau.de> (검색일: 2021.12.21).

10) Tagesschau(2021), “Debatte um Impfpflicht: Kubicki hofft auf Unterstützer”, Dezember 17, <https://www.tagesschau.de> (검색일: 2021.12.21).

11) SPD, Bündnis90/Die Grünen und FDP(2021), “Mehr Fortschritt wagen: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https://www.spd.de> (검색일: 2021.12.21).

정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표하는 하르츠4의 폐지와 시민수당의 도입, 시민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등 과감한 복지정책을 제시하였다. 해당 내용은 현재 연정 협약을 통하여 전체적인 기초만 소개된 단계이고, 세부적인 법안 및 정책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연방의회 통과 과정에서 보완 또는 수정될 수 있다.

## 시민수당 도입

신호등 연정은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인 하르츠4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민수당을 도입하고자 한다. 시민수당은 하르츠4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그동안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의 사회 참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다만 일부 개선 내용을 제외한 시민수당의 기본적인 내용은 하르츠4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르츠4에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존 제도와 시민수당을 구별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추가 소득 활동 지원

지금까지 하르츠4 신청자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 추가 소득에서 100 유로를 기본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당에서 80% 이상의 차감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하르츠4 수급자들이 단시간 근로에 머무르게 하고 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위한 현실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정은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민수당 제도하에서 수급자의 추가 소득 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추가 소득 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sup>12)</sup>

### 최초 2년간 재산공제 폐지

기존의 하르츠4 신청자가 일정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이를 소비한 이후에야 수당 수급이 허용되었지만, 시민수당 제도하에서는 최초 2년간 보유한 재산 공제 없이 시

12) Huber, P.(2021), "Hartz IV, Rente&Mindestlohn : Das bedeuten die Ampel-Pläne für die Geldbeutel der Bürger", *FR*, Dezember 10, <https://www.fr.de> (검색일 : 2021.12.21).

민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의 예금액 등 수당 수급자에게 허용되는 저축자산의 한도를 높이고, 저축자산의 평가를 디지털화하여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자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연정 협정에 따르면 2022년 현재 9.82유로인 최저임금은 사민당의 총선 공약대로 시간당 12유로로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며, 12유로로 인상된 후의 인상에 대하여는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연정은 임금요율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의 EU 내 적절한 최저임금에 관한 지침(Richtlinie über angemessene Mindestlöhne in der EU)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 내 공정한 최저임금 지급과 통일된 규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EU 공통의 최저임금이나 특정 금액이 명시된 것은 아니나 연정의 독일 내 최저임금 인상 추진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시민수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또한 연정 협정에서 제안된 단계로 법안 통과 및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정은 2022년 연내 연방의회 통과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단체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관련 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인상되는 것은 임금협상의 자율권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3)</sup>

## ■ 직업교육시장의 불균형 심화<sup>14)</sup>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독일 직업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술인력교육<sup>15)</sup>체도의 변화가 요구되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지역과

13) Diekmann, F.(2021), "Arbeitgeber drohen mit Klage gegen rasche Mindestloohnerhöhung", *Spiegel Wirtschaft*, Dezember 30, <https://www.spiegel.de> (검색일 : 2022.1.1).

14) IAB-Stellungnahme(2021), "Ausgewählte Beratungsergebnisse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https://www.iab.de> (검색일 : 2021. 12. 21).

15) 포괄적인 의미의 직업교육제도 중 대학교육을 제외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아우스빌둥(Ausbildung)

업종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노동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체 기술인력교육에서 15만 1,500개의 정원 미달이 발생한 한편, 8만 4,000명의 지원자는 희망하는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달 분야는 10개이며, 요식업, 식료품 가공 및 청소 업체에서 특히 많은 미달이 발생했다. 초과 분야는 미디어와 일부 상경 계열이다.<sup>16)</sup>

IAB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특히 동독 지역의 업체들이 교육생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sup>17)</sup> 해당 문제는 주로 소규모의 사업체에서 두드러져 소규모 업체들의 기술인력교육 참여가 지난 몇 년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sup>18)</sup>

기술인력교육 지원자를 채우지 못하는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독일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문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세금 감면 혜택 등으로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의 유입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생 지원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교육생 자리를 바로 구하지 못하는 비율은 지난 몇 해 동안 약 60%에 달하였는데, 교육과 취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술인력교육의 특성상 학교 졸업 후 미취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sup>19)</sup>

시스템을 말한다.

16)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2021), “Der Ausbildungsmarkt zu Beginn des Beratungsjahres 2021/22”,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 (검색일: 2021.1.5).

17) Ute, L. and B. Schwengler(2021), “Betriebliche Ausbildung in Deutschland: Unbesetzte Ausbildungsplätze und vorzeitig gelöste Verträge erschweren Fachkräftesicherung”, <https://www.iab.de> (검색일: 2021.12.21).

18)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2021), “Berufsbildungsbericht 2021”, <https://www.bmbf.de> (검색일: 2021.12.21).

19) Schmillen, A. and M. Umkehrer(2018), “The Scars of Youth. Effects of Early-Career Unemployment on Future Unemployment Experienc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56, Issue 3-4, pp.465~494.

## ■ 의무적 재택근무 시행

### 사용자의 재택근무 제공 의무

2021년 독일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의무적 재택근무가 시행되었다. 우선 4월 21일 시행된 감염보호법에 규정된 의무적 재택근무는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만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11월 24일 개정된 감염보호법에 의하여 만료되었던 내용이 다시 시행되었다. 이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무직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영상 이유가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재택근무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노동자의 주거 내 공간적 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sup>20)</sup>

###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성 변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업무로 인한 대면 접촉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일상적으로 시행되면서, 업무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IAB가 최소 노동자 1인 이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기업이 재택근무가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2%의 기업은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생산성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한 기업은 13%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영역에서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성의 악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팬데믹하에서 재택근무 경험에 대하여 약 40%의 기업이 매우 긍정적 혹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17%가 부정적이라고 답하여, 전체적으로 재택근무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였음을 보여주었다.<sup>21)</sup>

20) Alipour, J. V., O. Falck, R. Follmer, R. Gilberg and B. Nolte(2021), "Homeoffice im Verlauf der Corona-Pandemie", <https://www.bmwi.de> (검색일: 2022.1.5).

21) IAB(2021), "Für die allermeisten Betriebe hat sich die Produktivität durch Homeoffice nicht verschlechtert", <https://www.iab.de> (검색일: 2021.12.21).

## ■ 맺음말

2021년 독일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전년에 이은 팬데믹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에 현재 의무적 재택근무가 시행 중이고, 직장에서의 3G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 등 장기적인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심화된 직업교육시장의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호등 연정이 제시한 복지제도 개편안은 새로운 물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총선과 연정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동개혁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연정이 기후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여러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수당 등을 위한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는바, 연정 협약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LI**